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 3.



중소기업청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이 책자는 2017년 2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2월 이후 개정된 법령은 책자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세제지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과 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확인 사이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조세지원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Contents

I |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 | |
|------------------------|----|
| (1) 중견기업 정의 | 13 |
| (2) 중견기업 구간 신설제도 | 16 |

II |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 | |
|--------------------------------------|----|
| 1. 시설투자 | 27 |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9 |
|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1 |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4 |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6 |
|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8 |
|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40 |
| (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43 |
| (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45 |

| | |
|--------------------------------------|----|
| 2. 투자촉진 | 47 |
| (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49 |
| (2)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51 |
|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52 |
| (4) 제3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5 |
| (5)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57 |
|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9 |
| 3. R&D | 61 |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63 |
|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66 |
|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9 |
|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71 |
|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3 |
| (6)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75 |
| 4. 고용촉진 | 77 |
| (1) 근로소득증대세제 | 79 |
| (2) 청년고용증대세제 | 82 |
| 5. 구조조정 · M&A | 85 |
|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87 |
|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90 |
|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93 |
|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96 |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8 |

| | |
|---|------------|
| (6)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00 |
|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2 |
| (8)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 104 |
| | |
| 6. 수출 등 | 109 |
| (1)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111 |
| (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113 |
| | |
| 7. 지방이전 | 115 |
|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17 |
|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119 |
|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121 |
| | |
| 8. 가업승계 | 125 |
| (1) 가업상속공제 | 127 |
|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31 |
|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135 |
| (참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37 |

III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 | |
|---------------|-----|
| (1) 기업소득환류세제 | 144 |
| (2) 일감몰아주기 과세 | 146 |
| (3) 일감떼어주기 과세 | 149 |
| (4) 유가증권 할증평가 | 151 |

IV | 참 고

| | |
|--|-----|
|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160 |
| (2) 중복지원의 배제 | 163 |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66 |
|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169 |
| (5)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170 |
|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73 |
| (7)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175 |
| (8)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178 |

2017년도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중견기업 정의

(2) 중견기업 구간 신설제도

1 중견기업 정의

정 의

- “중견기업”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아닐 것
 - ③ 자분소유,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관련조항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제외기업

- “중견기업”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 관련조항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소·중견기업 판단기준

● (규모기준 : 3년 평균매출액)

| 주업종 | 중소기업 | 후보기업* | 중견기업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제조업 6. 기구제조업 | 1,500억원 이하 | 1,000억원 이상 | 1,500억원 초과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제조업 11.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구 제조업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조업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원 이하 | 700억원 이상 | 1,000억원 초과 |
| 24. 음료 제조업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 운수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00억원 이하 | 550억원 이상 | 800억원 초과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 400억원 이상 | 600억원 초과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39. 부동산업 및 입대업 40. 교육서비스업 | 400억원 이하 | 300억원 이상 | 400억원 초과 |

*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기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 (자산총액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법인이 주식 등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16.4.28 이후부터)
- 관계기업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15.1.1 이후부터)

해석사례

◆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2015.04.06)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졸업유예 규정

-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년 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2 중견기업 구간 신설제도

2017년부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확대되었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내 용 | 종 전 | 개 정 |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 | | |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 신규상장 중소·중견 4% 공제 (‘15.12.31까지) '15년 신규상장기업은 이후 3년간 공제 | (좌 동) | 1,500억 미만 | | | |
| 일반 R&D 증가분방식 (조특법 제10조제1항 제3호가목) | 중소 50%, 일반 40% | 중견구간 신설 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30% | 5,000억 미만 | | | |
| 일반 R&D 당기분 방식 (조특법 제10조제1항 제3호나목) | 구 분 중소(유예포함) 중견 1~3년차 중견 4~5년차 중견(3년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대기업 | 공제율(%) 25 15 10 8 2~3 | 구 분 중소(유예포함) 중견 1~3년차 중견 4~5년차 중견(3년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대기업 | 공제율(%) 25 15 10 8 1~3 | 중견 5천억원 이상& 대기업 지원축소 | 5,000억 미만 |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 중소 6%, 중견 3%, 대기업 1% (‘18.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 |
| 기술이전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제1항) |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50% 감면 (‘18.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 |

I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II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III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IV 참고

| 내용 | 종전 | 개정 | 증견기준 (3년 평균 매출)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중소 7%, 중견 5%, 대기업 3% (`17.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 중소 7%, 중견 5%, 대기업 3% (`17.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 중소 6%, 중견 3%, 대기업 1% (`16.12.31까지) | 일몰연장 '18.12.31까지 | 3,000억 미만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 중소 10%, 중견 5%, 대기업 3% (`16.12.31까지) | 일몰연장 '18.12.31까지 | 3,000억 미만 |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 중소 7%, 중견 5%, 대기업 3% (`16.12.31까지) | 일몰연장&지원축소 중소 6%, 중견 3%, 대기업 1% (`19.12.31까지) | 3,000억 미만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 <신 설> |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 (`18.12.31까지) | 3,000억 미만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 <신 설> |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3% (`19.12.31까지) | 3,000억 미만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 '17.12.31까지 · (기본공제) 중소 3%, 중견 1~2%, 대기업 폐지 · (추가공제) 중소·중견 4~5%, 대기업 3~4% * 증견·대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 | (좌 동) | 3,000억 미만 |

| 내 용 | 종 전 | 개 정 | 증견기준 (3년 평균 매출) |
|--|---|--|--|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조특법 제28조의2) | 중소기업만 가속상각 허용 ('16.6.30까지) | 증견기업까지 확대 및 일몰연장 ('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17.6.30까지) | 3,000억 미만 |
|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제1항) | 중소·증견 10%, 대기업 5% ('17.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제3항) |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 중소 20%, 증견 10%, 대기업 5% ('16.1.1부터 '17.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중소·증견 1인당 500만원 공제 (대기업 1인당 200만원) ('17.12.31까지) | (좌 동) | 3,000억 미만 |
|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증소·증견 증여세 과세기액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10% 특례세율 | (좌 동) | 3,000억 미만 |
|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 · (비용지급시) 중소 25%, 증견 8~15%, 대기업 1~3% · (시설투자시) 중소 6%, 증견 3%, 대기업 1% ('16.12.31까지) | 일몰연장 '19.12.31까지 | (비용지급시) 5,000억 미만 (시설투자시) 3,000억 미만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 증견·대기업은 완전복귀시에만 지원 | 증견기업도 부분복귀시 감면 | 3,000억 미만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조특법 제118조의2) | 국내복귀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 감면(중소만) | 증견기업까지 확대 ('18.12.31까지) | 3,000억 미만 |
| 수출 중소·증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부가법 제50조의2) | 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3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원 | 수출비중 50%이상인 증견기업까지 확대 ('17.4.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3,000억 미만 |
| 기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 사전·사후요건 총족한 중소·증견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 | (좌 동) | 3,000억 미만 |

I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II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III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IV 참고

| 내용 | 종전 | 개정 | 증견기준 (3년 평균 매출) | | | | | | | | | | | | | | |
|---------------------------------|--|---|--------------------|----|---|----------|---|----------|---|----------|----|-------------|----|------------|----|-------|--------------------|
|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 정상거래비율 중소·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정상거래비율 : 총매출액 대비 특수 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30%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5,000억 미만 | | | | | | | | | | | | | | |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 중소·중견 50% 감면 ('16.12.31까지) | 일몰연장 '18.12.31까지 | 3,000억 미만 | | | | | | | | | | | | | | |
| 특허보세구역 특례 (관세법 제176의2) |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이상('17.12.31까지는 20%이상) 특허 부여 | (좌 동) | 5,000억 미만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율 (조특법 제132조제1항)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중소</td><td>7</td></tr> <tr> <td>중견 1~3년차</td><td>8</td></tr> <tr> <td>중견 4~5년차</td><td>9</td></tr> <tr> <td>100억원 이하</td><td>10</td></tr> <tr> <td>100~1,000억원</td><td>12</td></tr> <tr> <td>1,000억원 초과</td><td>17</td></tr> </tbody> </table> | 구 분 | 세율(%) | 중소 | 7 | 중견 1~3년차 | 8 | 중견 4~5년차 | 9 | 100억원 이하 | 10 | 100~1,000억원 | 12 | 1,000억원 초과 | 17 | (좌 동) | 증견진입 연차별로 차등 |
| 구 분 | 세율(%) | | | | | | | | | | | | | | | | |
| 중소 | 7 | | | | | | | | | | | | | | | | |
| 중견 1~3년차 | 8 | | | | | | | | | | | | | | | | |
| 중견 4~5년차 | 9 | | | | | | | | | | | | | | | | |
| 100억원 이하 | 10 | | | | | | | | | | | | | | | | |
| 100~1,000억원 | 12 | | | | | | | | | | | | | | | | |
| 1,000억원 초과 | 17 | | | | | | | | | | | | | | | | |

2017년도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 구분 | 항 목 | 내 용 |
|----------|---|--|
| 시설 투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5%, 대기업 3% 공제 ('17.12.31까지) |
|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 안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10%,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5%, 대기업 3% 공제 ('17.12.31까지)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6%,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3%, 대기업 1% 공제 ('18.12.31까지)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 5%(매출 3천억원 미만), 대기업 3% 공제 ('18.12.31까지) |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6%,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3%, 대기업 1% 공제 ('19.12.31까지)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8%,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5~7%, 대기업 3~4% 공제 ('17.12.31까지)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시설 취득금액의 7% 공제 ('18.12.31까지) |
|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 (교육비용 지급시) 중소 25%, 중견(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1~3% ('19.12.31까지) (시설 기부시) 중소 6%,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3%, 대기업 1% ('19.12.31까지) |
| 투자 촉진 | 중소·중견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2)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손금 산입 ('17.6.30까지) |
| | 중소·중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50% 감면 ('18.12.31까지)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해외진출한 중소 및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50 ~ 100% ('18.12.31까지) (관세감면) 50 ~ 100% ('18.12.31까지) |

| 구분 | 항 목 | 내 용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중소 5%, 일반 3% 공제 ('18.12.31까지) |
| |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19.12.31까지)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출비용의 중소 10%,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7%, 대기업 3% 공제 ('19.12.31까지) |
| R&D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30%, 일반 최대 30% ('18.12.31까지) (일반 R&D 증기분) 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30% (일반 R&D 당기분) 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1~3% * 중견기업 : 매출 5천억원 미만 |
|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18.12.31까지) |
|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6%,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3%, 대기업 1% 공제 ('18.12.31까지)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7%, 대기업 5% 공제 ('18.12.31까지) |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 (기술이전) 중소 및 중견 50% 감면 ('18.12.31까지) (기술취득) 중소 10%, 중견 5% 공제 ('18.12.31까지) * 중견기업 : 매출 3천억원 미만 |
|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18.12.31까지) |
| 고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 중소 및 중견 10%, 대기업 5% ('17.12.31까지) (정규직전환시)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17.12.31까지) * 중견기업 : 매출 3천억원 미만 |
| |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5) |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근로자수에 중소 및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17.12.31까지) |

| 구분 | 항 목 | 내 용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 ('18.12.31까지)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4) |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 ('18.12.31까지) |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7조) | 기업자산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 | 완전자회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이연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 |
|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때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18.12.31까지) |
| 구조 조정 · M&A |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 양도일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8.12.31까지) |
| |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공제 ('19.12.31까지) |
| |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8.12.31까지) |
| |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 모법인은 채무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8.12.31까지) |
| |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 수증법인은 증여재산가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 ('18.12.31까지) |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8.12.31까지) |

| 구분 | 항 목 | 내 용 |
|-------|---|---|
|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0)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18.12.31까지) |
| | 합병에 따른 종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1)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에 따라 종복자산이 발생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8.12.31까지) |
| 수출 등 | 수출 중소·중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조특법 제50조의2)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 | 특허보세구역 특례 (조특법 제176조의2)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1회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허 갱신, 특허수수료 특례 |
| 지방 이전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17.12.31까지) |
| |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산입 ('17.12.31까지) |
| |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며,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의제 (이전하는 경우 '17.12.31까지, 신축하는 경우 '20.12.31까지) |
| 기업 승계 | 기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 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이 기업상속시 상속재산기액의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이 기업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기액의 10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 적용 |
| | 기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상증법 제71조) | 기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포함 최대 15년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장 |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시 설 투 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 ~ 2017.12.31

지원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 하는 내국인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①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 ②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 ③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④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⑤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⑥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5.1.1 ~2017.12.31 | 7% | 5% | 3%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12조

☞ 해석사례

❖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사전답변-법규법인 2010-389, 2011.01.28)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산업·안전정책상 필요한 안전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 ~ 2017.12.31

지원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해당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등근톱·로울러 및 앙종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기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기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봄

- ④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
- 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 ⑥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
-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⑧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 시설
- ⑨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
- 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
- ⑪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차로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
- ⑫ 내진보강설비
- ⑬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5.1.1 ~2017.12.31 | 7~10% | 5% | 3%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13조

☞ 해석사례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피랫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2016.06.24)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 1. 1 ~ 2018. 12. 31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기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6.1.1 ~2018.12.31 | 6% | 3% |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13조의2

☞ 해석사례

◆ 에너지절약시설 철거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2015.05.01)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07.02)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4.1.1 ~ 2018.12.31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①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② 청정생산시설로서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4.1.1 ~2018.12.31 | 10% | 5% | 3%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22조의3, 시행규칙 13조의3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4.1.1 ~ 2019.12.31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투자하는 내국인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 ~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4.1.1 ~2016.12.31 | 7% | 5% | 3% |
| 2017.1.1 ~2019.12.31 | 6% | 3% |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시행령 제22조의4, 시행규칙 13조의4

☞ 해석사례

◆ 리모델링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1-0466, 2011.12.08)

◆ 기존시설 보수비, 수선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2-408, 2012.11.30)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국내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으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 ~ 2017.12.31

지원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는 제외)
 - 단,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빼고, 해당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비 성서비스업 외의 사업)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은 기본공제 + 추가공제(5~7%)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구 분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대기업) | |
|-------------------------|------|------|----|------|----|-----------|----|
| | | 수도권 | 안 | 수도권 | 밖 | 수도권 | 안 |
| 2015.1.1 ~2017.12.31 | 기본공제 | 3% | 3% | 1% | 2% | 없음 | |
| | 추가공제 | 4% | 5% | 4% | 5% | 3% | 4% |
| | 계 | 7% | 8% | 5% | 7% | 3% | 4% |

주 1. 수도권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주 2. 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업 등)인 경우 추가공제의 경우 1%를 가산

유의사항

- 세액공제 후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 시행령 제23조제9항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 해석사례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특, 법인세과 - 442, 2012.07.06)
-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자산 임대시 추징 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법인, 법인세과 - 158, 2014.04.08)

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종업원의 주거안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를 취득,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한 내국인

- ①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②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편의시설
- 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건물 등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한 것도 포함)
- ⑥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지원내용

- 해당시설의 취득금액(해당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취득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와 위의 해당시설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③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자산을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4항, 시행령 제94조제8항

절차 및 제출서류

-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43조의2

☞ 해석사례

- ❖ 종업원 휴게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
 -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달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법인, 서면법규과 -1233, 2013.11.08)
- ❖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종업원의 주거인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 (사전답변-법규법인 2013-2, 2013.01.25)

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산업교육 실시학교에 직업훈련교육과정 설치·운영비를 지급하거나 R&D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1.1 ~ 2019.12.31

지원대상

- (교육비용 지급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시설 기부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교육비용 지급 시는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교육비용 지급 시에는 8~15%(조특법 제10조를 준용), 시설을 기부시에는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1조를 준용)

| 구분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대기업) |
|----------|---------------------|------|-------|---------------|
| 교육비용 지급시 | | 25% | 8~15% | 2~3%* |
| 시설기부시 | 2016.1.1~2019.12.31 | 6% | 3% | 1% |

* 2017.1.1부터는 1~3%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시행령 제104조의17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투자촉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여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7.1~2017.6.30

지원대상

- 2016년 7월 1일(중견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 ※ 단, 해당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연도에 취득한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유의사항

-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함

- 본 제도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2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구성기기, 핵심부분품 등에 대하여 관세 50%를 감면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 ~ 2018.12.31

지원대상

-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해당물품 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이후에는 30%)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50% ('18.12.31이후에는 30%감면) | 50% ('18.12.31이후에는 종료예정) | 없음 |

☞ 관련조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제2호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련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법인세(소득세)를 50~100%를 감면하고, 복귀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 50~100%를 감면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1 ~ 2018.12.31

지원대상

- 국외(개성공단 포함)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소득세) 감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
 - ① (전부이전)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 ② (부분복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이상 축소한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도 허용)
 - (관세감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자본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 전부이전 또는 부분복귀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이전(복귀)전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국내복귀 후 업종이 세분류 내에서 동일한 경우
 - ☞ 자본재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2 참조
-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전부이전시)
 -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에는 100%,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50% 감면
 - (부분복귀시)
 - 복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에는 100%,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50% 감면
- (관세감면)
 - (전부이전시) 관세 100% 감면
 - (단, 수입순서에 따른 관세합산액이 4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감면불가)
 - (부분복귀시) 관세 50% 감면
 - (단, 수입순서에 따른 관세합산액이 2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감면불가)

사후관리

- (법인세(소득세) 감면)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전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관세감면)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2 제3항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세감면) 감면신청서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2, 시행규칙 제50조의5

4 제3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1.1 ~ 2018.12.3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비용을 초과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 ※ 단,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단, 공제금액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4조의14

☞ 해석사례

❖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규정을 적용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5**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9.12.31까지

지원대상

- (기금출연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

- | |
|---|
|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포함)에 출연하는 경우 |

- (무상임대기업)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국법인

※ 단,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출연과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기금출연기업) 해당 출연금의 7~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공제율 |
|---------------------|-----|
| 2014.1.1~2016.12.31 | 7% |
| 2017.1.1~2019.12.31 | 10% |

- (무상임대기업)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 경리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1 ~ 2019.12.31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드라마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의 인건비 등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지출한 비용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드라마 등이 여러 과세연도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7.1.1 ~ 2019.12.31 | 10% | 7% | 3%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시행령 제22조의6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R & 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①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②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적용기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018.12.31까지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기간 없음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①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자체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아래설명참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지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외에 연구인력개발비

지원내용

-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times 20\% + (\text{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 \times 3\text{배})$ (단, 30%를 한도로 함)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ㄱ), (ㄴ) 중에서 선택한 금액

단,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연도 일반R&D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R&D비용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분방식 적용

(ㄱ) 증가분방식 :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times 40\%$

(ㄴ) 당기분방식 :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times 8\sim 15\%$

|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대기업) |
|----------------|------|--------|-------|-----------|---------------|
| | | 1~3년차 | 4~5년차 | 6년차 이상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 30% | 최대 30% | | | 최대 30% |
| 일반 연구·인력 개발 | 증가분 | 50% | 40% | | 30% |
| | 당기분 | 25% | 15% | 10% | 8% 1~3% |

주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주 2. 중견기업 기준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3항, 4항, 5항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적용받으려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연구개발 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해석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의 자산기액이 총자산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 (조특, 법인세과-313, 2014.07.10)

◆ 연구개발출연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조특, 법인세과-66, 2011.01.25)

◆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기업(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중 시가 범위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 3년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加分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사전답변-법규법인 2013-557, 2014.04.01)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 국내기업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고 구분 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에는 익금불산입, 지출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래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 자산을 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지급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④ 내국법인이 분할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 부채, 손익을 분할 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지원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을 익금에 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출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 ①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②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 이 외 자산: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제2항,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
(단, 합병, 분할하여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1.1 ~ 2018.12.31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아래 표 참조)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전담부서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운휴중인 것은 제외)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신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직업훈련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 (운휴중인 것은 제외)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신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6.1.1 ~2018.12.31 | 6% | 3% | 1% |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연도마다 적용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 해석사례

-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 국내기업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1 ~ 2018.12.31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일 것
 -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기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17.1.1 ~2018.12.31 | 10% | 7% | 5%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 제3항

유의사항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시행령 제22조의5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 ~ 2018.12.31

지원대상

- (이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기술(아래 표 참조)을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에게 이전한 중소·중견기업
 - (취득) 특허권 등을 자체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
 - (대여)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특수관계인은 제외)한 중소기업
-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①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

지원내용

- 중견기업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감면,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5% 공제

|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기술이전 | 50%감면 | 50%감면 | 없음 |
| 기술취득 | 10%공제 | 5%공제 | 5%공제 |
| 기술대여 | 25%감면 | 없음 | 없음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6**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 ①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과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② 감면대상사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항,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지원내용

-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한도 내에서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

- 감면한도: ①과 ②를 합한 금액과 ③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큰 금액이 한도
 - ①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 사업용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② ①과 ③중 적은 금액
 -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 ③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의 20%
 - ③ ①과 ②중 적은 금액
 -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 ②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3항 ~ 5항,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해석사례

- ◆ 법인 분할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배제
(조특, 법인세과-297, 2011.4.25)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고용촉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근로소득증대세제

(2) 청년고용증대세제

1 근로소득증대세제

- ◆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 1. 1 ~ 2017. 12. 31

지원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⑥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 전환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매월 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 ③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1.2억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친족관계가 아닐 것

지원내용

-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견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10% 세액공제 (2015.1.1.부터 시행)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10% | 10% | 5% |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10%세액공제 (2016.1.1.부터 시행)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20% | 10% | 5% |

- ①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이란?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 평균임금, 평균임금증가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제12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을 참조

사후관리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기간 중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14조의2

2

청년고용증대세제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2.31까지 (201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원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내국인
 - * 단,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은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아래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 정규직 근로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내용

-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단,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
|-------|-------|-----------|
| 5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사후관리

- 공제 후 2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시행령 제26조의5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구조조정 · M&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
-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5)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8)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 내국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에 대해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한 내국법인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출자지분 가액이 50%미만인 경우
 - 단,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자비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④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단,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등

지원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양도가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 ② 기술가치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4항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내국법인

- ①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를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text{매입가액} \geq (\text{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times 1.3) \times \text{지분비율}$$
- ④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약 중 그 가액이 50%미만인 경우로서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단,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아래 표 참조)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단,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3배) × 지분비율*)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단, 피인수법인이 피산하거나 「채무자화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 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 해석사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특,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기업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자산의 대부분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청산한 내국법인
 - ☞ 자산의 대부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 자산총액의 70%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순자산가액)의 90%이상

- 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 ②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대가 중 의결권이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이상으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내용

- (피인수법인) 양도차익금액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 ☞ 계산식 : $(\text{인수대가} - \text{양도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 \times \text{인수대가 중 인수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 \text{인수대가}$
- (피인수법인의 주주) 해산시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금액은 (1)과 (2)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1)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재산가액 –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 취득가액
 - (2)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 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
- (인수법인)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자산별로 계상)
 -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세무조정사항(자산·부채와 관련된 것) 등을 승계

사후관리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수법인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
 - ①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 또는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피인수법인) 인수법인과 함께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에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 (인수법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시행령 제35조

▣ 해석사례

- ❖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조특, 서면법규파-989, 2013.09.11)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조특, 법인세과-50, 2013.01.24)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대방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

-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이전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 대가의 총합계액 중 원전모회사 주식의 기액이 80%이상이거나 완전모회사의 원전 모회사 주식의 기액이 8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
- ③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④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내용

-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금액을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

- 손금에 산입할 때 산식: (①-②)금액을 손금에 산입,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① 완전모회사등 주식의 기액, 금전, 재산기액합계액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기액을 뺀 금액
 - ② ①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 금전, 그 밖의 재산기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

사후관리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완전모회사는 자산 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

①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②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완전모회사는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시행령 제35조의2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 12. 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①과 ②)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
-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한 전환지주회사에 아래의 요건(①~⑤)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 주식과 교환한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

- ①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 등
- ②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③ 전환지주회사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
 -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 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 ④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
- ⑤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금액을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사후관리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수법인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양도차익 금액을 익금에 산입

- ①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②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 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 ②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 ③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④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 특례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35조의3

6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8. 12. 31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
 - *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유의사항

- ①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 ② 내국법인 또는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단, 아래와 같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 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 출자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5조의5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1 ~ 2019.12.31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은?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사후관리

-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벤처기업 등)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8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시 세제지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 추진
- ◆ 적용기간 : 2018.12.31까지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지원내용)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②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양도 후 3년 이내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 ③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폐업 또는 해산, 해당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④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시행령 제116조의30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 (모법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기 위해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감소한 채무감소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② 채무를 인수·변제한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 또는 해산, 해당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단,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세액,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 ③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않은 경우
- ④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시행령 제116조의31

주주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 (수증법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자산가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발생해야 함
- ② 사업재편계획에는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을 사용한다는 내용 포함

- (주주)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②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 ③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폐업 또는 해산, 해당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④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시행령 제116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의 과세특례

- (지원내용)
 - (채무면제법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채무면제의 전액을 익금산입 전 폐업 또는 해산, 해당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②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시행령 제116조의3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 ① 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업종인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 ② 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 등이 교환대상법인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시행령 제116조의3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 (사후관리) 특례적용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①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②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시행령 제116의35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수출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2) 특허보세구역 특례

1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4.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지원대상

- (대상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액 비율이 3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② 최근 2년간 국세(관세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③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④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대상재화)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납부 유예

절차 및 제출서류

- 신고기한확인서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의3)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유예를 취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72조, 제91조의2

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 특허갱신, 특허수수료에 대해 특례 적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20%)이상 특허 부여
-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1% (이 외는 0.1% ~ 1%)

절차 및 제출서류

- (특허 갱신) 갱신사유, 갱신기간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6조의2, 시행령 제192조의2, 제192조의3, 제192조의5, 제192조의6, 제192조의7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지방이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2.31까지

지원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전 전과 후의 공장 업종(세분류)이 같아야 함)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②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용어정리

☞ 대도시란?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 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지원내용

-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익금에 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 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해석사례

❖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답변-법규법인 2012-289, 2012.08.17)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7.12.31까지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서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전 전과 후의 업종(세분류)이 같아야 함)

-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내용

-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② 본사 이전 3년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이상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 대지와 건물을 취득·임차 또는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 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3**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공장·본사 이전) 2017.12.31까지,
(공장·본사 신축) 2020.12.31까지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아래 요건을 갖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단, 이전 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세분류)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함
-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③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지원내용

- (세액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 감면
 - 단,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 (양도차익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를 준용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제특례)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대상으로 의제(단, 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
 - ☞ 분리과세대상이란?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별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은 완화

유의사항

-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아래 요건(① ~ ⑤)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
- 분리과세대상적용 토지로 적용받은 법인이 아래 요건(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①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단, 합병·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②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한 경우
 - ④ 본사이전 3년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 50%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⑤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서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 해석사례

❖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

-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 시에는 감면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조특, 법인세과-955, 2010.10.19)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여부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수 있음(조특, 법인세과-944, 2011.11.28)

❖ 공장시설을 개체·증설하여 이전시 감면여부

-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 철거, 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조특, 서면법규과-975, 2013.09.09)

❖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조특, 서면법규과-820, 2013.07.07)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가업 승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가업상속공제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참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공제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법상 '기업' 요건을 갖추고 경영한 기업

① 기업이란?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 3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② 기업상속공제상 중소·중견기업 이란?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함
 - * 단,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은 제외
- 중견기업 :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적용요건

- 피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② 기업의 영위기간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지원내용

- 가업상속공제한도(5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제외)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사후관리

- 가업상속 후 10년 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① 기업용 자산의 20%(상속후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소분류내에서 업종 유지 (단,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을 30% 이상 유지)
 - 해당기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단,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함)
 - ④ 정규직 근로자수가 미달한 경우
 -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기준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20%(중소기업은 100%)에 미달하는 경우
- ☞ 기간별 추정율: 7년 미만(100%), 7년 이상 8년 미만(90%), 8년 이상 9년 미만(80%), 9년 이상 10년 미만(70%)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해석사례

-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08.04)

- ❖ **기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여부**
 - 주식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서면법규과-763, 2014.07.18)
- ❖ **부(父)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母)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부(父)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모(母)의 사망으로 모(母)가 운영하던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상증, 서면법규과-487, 2014.05.15)
-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기업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제15조④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2016.10.25)
-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기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 ❖ **관계기업이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959, 2016.07.29)
- ❖ **유상증자로 취득한 10년 경과하지 않은 주식의 기업상속공제 여부**
 -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적용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
- ②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전체 50%(상장 30%)이상

-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거주자인 자녀
 -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지원내용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

<증여세 세율 비교>

| 과세표준 | 세율 | |
|------------------|------|-------------|
| | 일반증여 |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0%(공제)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0% |
|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50% | 20% |
| 100억원 초과 | 50% | 50% |

☞ 세부내용

- 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기액은 증여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기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일반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기액을 합산)
- ②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이용이 불가
- ③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업상속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업상속공제도 이용 가능
- ④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사후관리

-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주식기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증세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부과

- 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 ②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소분류 내에서 변경은 제외, 단,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을 30% 이상 유지)
 -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과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감소는 예외)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단, 해당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식처분 및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 해석사례

❖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조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특, 재산세제과-809, 2010.11.01)

❖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조특, 재산세제과-723, 2010.10.05)

- ❖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33, 2016.12.21)
- ❖ 기업의 재차 승계 여부
 - 기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승계특례 적용
(조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 참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지원대상: 18세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창업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지원내용: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기액에서 5억원 공제, 10% 특례세율
(한도: 증여세 과세기액 30억원 한도(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 지원요건: 증여받은날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후까지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사용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연장 해주는 제도로 거치기간 포함 최대 15년까지 운영

적용요건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제공

지원내용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 납부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간 분할 납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기간>

| 세 목 | | |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
|-----|--------|-------|--------------------------------|
| 상속세 | 기업 | 50%미만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
| | 상속재산 | 50%이상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
| | 일반상속재산 |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자료: 국세청,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6 인용

사후관리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담보변경,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세액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기업상속 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 해석사례

- ◆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내에서 변경허가 할 수 있음
(상증,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참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 취득가액과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과세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①+②를 합한 금액
 - ①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 *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 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추징세액을 조정

적용대상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적용시기

- '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시행령 제16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

2017년도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증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증견·대기업 과세제도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1) 기업소득환류세제

(2) 일감몰아주기 과세

(3) 일감떼어주기 과세

(4) 유가증권 할증평가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 항 목 | 내 용 |
|---------------------------|--|
| 기업소득환류세제 (법인세법 제56조)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17.12.31까지) |
|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40%, 일반 3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 일감떼어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4) | 수혜법인 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
| 유가증권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지분율이 50%이하인 경우 20%,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할증하여 평가 |

1

기업소득환류세제

- ◆ 기업소득에서 “투자, 배당액, 근로자임금증가”분을 차감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5.1.1~2017.12.31

적용대상

- 자가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단,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

과세방식

- 기업이 ① 또는 ②중 하나를 선택하고 3년간 동일한 과세방식 적용
 - ① [당기소득 × 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세율)
 - ② [당기소득 × 기준율(3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세율)

-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법 상)에 가감을 조정
 - (가산항목)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약금불산입액,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금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액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불산입액 등
- 투자: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취득액
 -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 토지 등
 - (무형고정자산)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실용신안권 등
- 임금증가: 상시근로자의 해당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 배당액: 금전배당, 자사주매입(소각) 등 배당합계액

- 기존 누적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고, 20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가 가능
- 과세방식(① 또는 ②)은 최초 선택시 3년간 동일한 과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며, 과세방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연도에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적용기한

-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15~'17년 사업연도까지)

절차 및 제출서류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시행령 제93조, 시행규칙 제46조의3

2 일감몰아주기 과세

-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중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2.1.1~

적용대상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 40%, 일반 30%)을 초과할 것
 -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 10%, 일반 3%)을 초과할 것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 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특별법에 부합

-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 40%, 일반 3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 지배주주: 수혜법인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 법인인 경우는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간 거래
-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법인으로 한정)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증여의제이익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② 수혜법인이 대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예)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7.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7.6.30 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2

☞ 해석사례

- ❖ 수혜법인이 다른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다른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1871[상속증여세과-1057], 2015.10.15)
- ❖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사전답변-법규재산 2014-150, 2014.06.11)
- ❖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 (상증, 서면법규과-1305, 2013.11.29)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주식보율 의미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계산시 주식 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1187, 2015.07.22)

3 일감떼어주기 과세

- ◆ 수혜법인 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6.1.1~

적용대상

-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 및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은 제외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차액납부 및 환급

- (차액납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
- (환급)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정산증여의제이익이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실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 계산식: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증여세 신고 · 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예)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7.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7.6.30 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8

4 유가증권 할증평가

- ◆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식
 - ☞ 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할증평기를 제외하는 경우

- 중소기업 ('17.12.31까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부터 결손금이 계속하여 있는 법인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할증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가산
 - 단, 중소기업 주식은 '17.12.31까지 할증평가에서 제외
 -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

<기업규모별 할증률>

| 구 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 지분율 50% 이하 | 10% | 20% |
| 지분율 50% 초과 | 15% | 30% |

주: 중소기업은 '17.12.31까지 할증적용 배제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해석사례

-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상증, 서면법규과-29, 2014.01.14)
- ❖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상증,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통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
(상증, 상속증여세과-474, 2014.12.09)

2017년도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증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IV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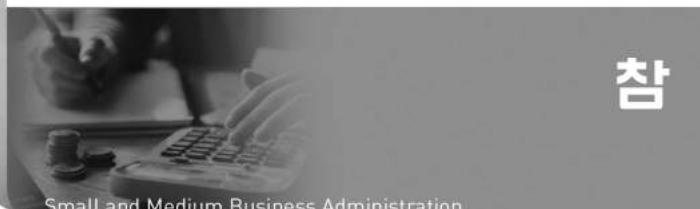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참 고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2) 중복지원의 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5)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8)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참 고

| 항 목 | 내 용 |
|-------------------------------------|--|
| 최저한세 감면배제 (조특법 제132조)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최저한세율) 중소 7%, 중견 1~3년차 8%, 중견 4~5년차 9%, 일반 기업 10~17% |
|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제127조) |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 |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법인세법 제13조) | 중소기업 외 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적용 (중소기업은 100%)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세법 제76조의8 외) |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조특법 제144조) |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①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은 제외)
- ②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적용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적용
 - ☞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6조)
 - 외국법인의 지점세 (법인세법 제96조)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 이자 상당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최저한세 계산구조

① A와 B중 큰 금액 + ② 가산세 등 - ③ 외국납부세액 등

① A와 B중 큰 금액

- A : 각 종 감면후의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4호에 의한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B : 각 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준비금,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임금불산입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가산세 등

-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③ 외국납부세액 등

- 외국납부세액
- 재해손실세액
- 농업소득세액 등

최저한세 적용세율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공제 적용순서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 포함) 경우

-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

②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제한 후 세액을 계산

-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32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제132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 세액공제 (제1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 *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법인세(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제132조제1항제4호, 제2항제4호)
-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32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처리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 해석사례

- ❖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특, 법인세과-51, 2013.01.24)
- ❖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특, 법인세과-412, 2012.06.22)

2 중복지원의 배제

- ◆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

세부내용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동일 자산에 대해서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아래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주요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2조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제4항, 제5항)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제4항)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2조제4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제63조의2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등

☞ 주요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5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8조의3)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등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감면 배제〉

-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2조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제4항, 제5항)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제4항)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제63조의2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85조의6제1항, 제2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제1항) 등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 배제대상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

● 배제자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이 외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고정자산의 수량,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공장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단,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기숙사, 대피소, 무기고, 탄약소, 교육시설은 연면적 포함에서 제외

☞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제4항)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 구 분 | 배 제 자 산 |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같은 조 7호 및 9호는 제외하고,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소방관련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등 |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자 중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배제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구 분 | 배 제 자 산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제25조) *같은 조 7호 및 9호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소방관련물품-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설비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등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 2016.1.1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단, 중소기업은 100%)

적용대상

-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해석사례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기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법인, 법인세과-397, 2014.09.19)

5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 적용기간 : 2010.1.1~

적용대상

-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함)

- 완전모법인: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단, 비영리법인,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은 제외
- 완전자법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은 제외

☞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2항

연결납세방식 취소·포기·추가·배제

- (취소)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불일치, 완전지배하지 않은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법인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한 해당법인의 결손금은 손금에 산입

- *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되면, 5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포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
 - * 단,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 할 수 없음
- (추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 (배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 이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
 - ☞ 참고: 법인세법 제76조의9 ~ 제76조의12, 시행령 제120조의14 ~ 제120조의16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연결과세표준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 소득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합계액을 차례로 뺀 금액
- 연결집단 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
 - * 법인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빼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적용

신고절차

- (신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아래에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
 - ① 감면세액
 - ② 연결중간예납세액
 - ③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 제76조의19, 시행령 제120조의12 ~ 제120조의25, 시행규칙 제60조의2 ~ 제60조의4

☞ 해석사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있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 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답변-법규법인 2011-0530, 2011.12.22)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해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5조)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8조의3)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제2항)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 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94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 해외지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 금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제1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지원내용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시행령 제136조의2

7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당 기업의 주업종 | 분류 기호 |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1,500억원 이하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제조업 | C28 | |
| 6. 가구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제조업 | C12 | |
| 11.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1,000억원 이하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 해당 기업의 주업종 | 분류 기호 |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000억원 이하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 22. 건설업 | F |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 24. 음료 제조업 | C11 | |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0억원 이하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 31. 운수업 | H |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억원 이하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400억원 이하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 41. 교육서비스업 | P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독립성기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
- 단, 아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 ⑤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8 중소기업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
| 업종 | 모든 업종 | 열거된 업종 |
|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기준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 독립성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5천억원 + 주식 30% 직간접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은 별표1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 <p>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다만, 주식소유비율 판단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p> |
| 상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좌 동 |
| 유예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최초 1회만 적용)· 유예기간 제외 사유<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 하였다가 평균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최초 1회만 적용)· 유예기간 제외 사유<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

▣ 해석사례

◆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제도 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 -2540] 2015.10.02)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답변-법규법인 2014-486, 2014.11.21)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전 화 : (042)481-68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팀

(02)3275-2103
